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1639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2월 26일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원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서울특별시 본청 청사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에 대한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마련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이나,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를 모든 청사에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별표 1 제2호의 시의회 청사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도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시의회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에 대한 면적 배정 근거를 명시함(안 별표 1 제2호).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시의회 청사

구 분		실 별	설 계 기 준	비 고	
의 원 실	a	의 장 실	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		
		부의장실	집행기관의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		
		위원장실	시의 실·국장실 면적 준용	위원회 수만큼 실수 확보	
		의원연구실	33.15㎡/의원 1인당	3,513.90㎡/106인	
회 의 실	b	본회의장	의원 수 × 5㎡ + 방청석 수×1.5㎡		
		회 의 실	의원 수 × 3.3㎡ + 답변석 면적	대 / 중 / 소	
		위원회실	의원 수 × 8.2㎡	상임위원회 수만큼	
부 속 공 간	c	사무처장실	시의 실·국장실 면적 준용		
		사 무 실	직원 수×7.2㎡		
		자료실 및 도서실		일반적 자료실 면적기준에 의거 198-297㎡	
		대기실	의 원	의원 수×2.5㎡	
			기 자	50㎡	
			운전기사	운전기사 수×1.8㎡	
	d	휴게실	의 원	의원 수×2㎡	
			직 원	직원 수×2㎡	
			방청객	방청객 수×2㎡	방청객수 = 인구 수 × 0.000015 + 50
		당 직 실	2인실기준 15㎡		
		화 장 실	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		
		기 타	예비실(50㎡)을 1개소 이상 확보	창고 / 예비실 등	
연계공간		로비·복도·계단	(a + b + c) × 30~40%		

※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의 면적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.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< 수정안 조문 대비표 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[별표 1]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1. 시의 본청 가. ~ 라. (생략) <u><신설></u> 2. 시의회 청사 (표생략)	[별표 1]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1. 시의 본청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마. <u>청소근로자 휴게시설</u> <u>등 타법령상 의무시설</u> <u>의 면적은 해당 법령</u> <u>의 규정에 따른다.</u> 2. (현행과 같음) (표생략) <u><신설></u>	[별표 1]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1. 시의 본청 가. ~ 라. (개정안과 같음) <u><개정안과 같음></u> 2. (개정안과 같음) (표생략) ※ <u>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</u> <u>타법령상 의무시설의</u> <u>면적은 해당 법령의 규</u> <u>정에 따른다.</u>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00만원”을 “5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: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
2.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: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
3. 200만원 초과: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

제3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50만원 이하: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
2.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: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
3. 100만원 초과: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

제9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: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
2.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: 1년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
3.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: 2년 이내 9회 범위에서 분납

별표 1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의 면적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.

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시의회 청사

구 분		실 별		설 계 기 준	비 고
의 원 실	a	의 장 실		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	
		부의장실		집행기관의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	
		위원장실		시의 실·국장실 면적 준용	위원회 수만큼 실수 확보
		의원연구실		33.15㎡/의원 1인당	3,513.90㎡/106인
회 의 실	b	본회의장		의원 수 × 5㎡ + 방청석 수×1.5㎡	
		회 의 실		의원 수 × 3.3㎡ + 답변석 면적	대 / 중 / 소
		위원회실		의원 수 × 8.2㎡	상임위원회 수만큼
부 속 공 간	c	사무처장실		시의 실·국장실 면적 준용	
		사 무 실		직원 수×7.2㎡	
		자료실 및 도서실		일반적 자료실 면적기준에 의거 198-297㎡	
		대기실	의 원	의원 수×2.5㎡	
			기 자	50㎡	
			운전기사	운전기사 수×1.8㎡	
	d	휴게실	의 원	의원 수×2㎡	
			직 원	직원 수×2㎡	
			방청객	방청객 수×2㎡	방청객수 = 인구 수 × 0.000015 + 50
		당 직 실		2인실기준 15㎡	
		화 장 실		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	
		기 타		예비실(50㎡)을 1개소 이상 확보	창고 / 예비실 등
연계공간		로비·복도·계단		(a + b + c) × 30~40%	

※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의 면적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분할납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)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3조(대부료의 납기) ① (생략)	제33조(대부료의 납기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대부료가 <u>100만원</u> 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와 같다.	② ----- <u>50만원</u> ----- ----- -----.
1. <u>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: 6 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</u>	1. <u>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: 6개 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</u>
2. <u>200만원 초과: 10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</u>	2. <u>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: 9 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</u>
3. <u>삭제</u>	3. <u>200만원 초과: 12개월 이내 12 회 범위에서 분납</u>
③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 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 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50만원 이하 : 3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</u>	1. <u>50만원 이하: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</u>
2. <u>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: 6 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</u>	2. <u>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: 9개 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</u>
3. <u>100만원 초과 : 10개월 이내 6 회 범위에서 분납</u>	3. <u>100만원 초과: 12개월 이내 12 회 범위에서 분납</u>
제90조(변상금의 분할납부) ① 영 제 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	제90조(변상금의 분할납부) ① ---- -----

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삭제

2.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: 1
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

3.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: 2
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

4. (생략)

[별표 1]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

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

1. 시의 본청

가. ~ 라. (생략)

<신설>

2. 시의회 청사

(표생략)

<신설>

--.

1.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: 6개
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

2.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: 1
년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

3.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: 2
년 이내 9회 범위에서 분납

4. (현행과 같음)

[별표 1]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

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

1. 시의 본청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
상 의무시설의 면적은 해당 법령의
규정에 따른다.

2. (현행과 같음)

(표생략)

※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
의무시설의 면적은 해당 법령의
규정에 따른다.